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유정희 의원 외 26명
- 나. 의안번호: 제2791호
- 다. 발의일자: 2021. 10. 15
- 라. 회부일자: 2021. 10. 20

2. 제 안 사 유

- 동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을 '규칙에서 정하는 실·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에서는 본부장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어문 규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3항)
- 나.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에 '실·국장' 외에 추가적으로 '본부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 대상에 본부장을 추가하며, 표준 맞춤법 및 어문 규정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해당 감면 적용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로 만료된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할 것임.
- 동 조례 제22조제4항제1호는 한강시민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행정 2부 시장, 한강사업본부장과 규칙에서 정하는 실·본부·국의 장인 실·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규칙도 문화본부장·도시계획국장·균형발전본부장·물순환안전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2조제4항제1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에 '본부장'을 추가하여 조례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조례 이해를 돕는 것은 적절할 것임.
- 그 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기준과 표준 맞춤법 및 어문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